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정부는 지난 3월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들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건설하도급부조리의 고질적병폐 척결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의 지불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었는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를 해주고도 원도급업체들의 도산이나 고의적인 대금미지급행위 등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이법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중 주요골자로 한 내용이다.



※ 주택건설등록업자,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등 건설관련업자 모두를 원사업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로부터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등 하도급업자 보호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

특히 지금까지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만을 받던 전문건설업체도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갖게 하는 등 하도급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즉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전문건설업체로서 위탁을 받은 상대사업자가 매출액이나 종업원수에 비해 어느 한가지라도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도 원사업자의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현 행	개 정
<p>제1조의 2(정의)</p> <p>[신설]</p> <p>① 법 제2조 제2항 제3호 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2조 제8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p>	<p>제1조의 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p> <p>①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종업원수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하고, 건설업·엔지니어링 활동업·소프트웨어개발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2조 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p>③ 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5. 폐기물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현 행	개 정
<p>제2조(서명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생략)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생략) 	<p>제2조(서명기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현행과 같음) 4. 하도급대금(선금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현행과 같음

※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가 신설되면서 원사업자들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하도급업자들은 원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눌러 불평등 계약을 강요받음은 물론 계획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기피하는 악덕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한편 원사업자들이 부도가 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원사업자의 부도발생시 하도급업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원사업자가 1개사 부도 발생시 50여개의 하도급업자가 부도 내지 심각한 경영난을 당하는 실태였다.

또한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수행중 하도급업자의 부도가 발생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연대보증인에게 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거의 손해를 전액 배상받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하도급업자가 도산할 경우 원사업자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액보다 더많은 보증금을 받아갈 수가 있어 하도급업자의 실태와 비교해 보면 실로 불평등도 이만저만 불평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하도급업자들은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공사를 해주고도 원도급업체들의 도산이나 고의적인 미지급행위 등으로 인해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에서 벗어나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개정
<p>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2.(생략)</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신설]</p> <p>[신설]</p>	<p>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p> <p>.....</p> <p>.....</p> <p>1.-2.(현행과 같음)</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p> <p>5.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확대, 원사업자가 85% 미만 금액으로 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도 발주자가 곧바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이내에 이를 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개정
<p>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p> <p>①(생략)</p> <p>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p> <p>①(현행과 같음)</p> <p>②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사업자단체</p> <p>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p> <p>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p> <p>3.(생략)</p> <p>4.(생략)</p> <p>5.(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하도급거래분야 제조위탁 및 수리</p> <p>건설위탁중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위탁</p>	<p>사업자단체</p> <p>1.</p> <p>2.</p> <p>3.(현행과 같음)</p> <p>4.(현행과 같음)</p> <p>5.(현행과 같음)</p> <p>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p> <p>7. 한국소프트웨어산업사회</p> <p>8. 대한건축사협회</p>	<p>하도급거래분야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활동법, 건축설계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제조위탁을 제외한다)</p> <p>법 제2조 제8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p> <p>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 건축설계위탁</p>

公共工事,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원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도급업자

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이행보증서를 각각 제출하는 상호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화를 적극 유

도하기로 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로부터 하도급공사 이행보증을 받고 하도급업자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사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제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회계법의 예규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원사업자와 하

도급업자간에 하도급계약시 이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서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과 보증서양식 등 하도급대금보증제의 세부절차를 갖출 예정이다.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등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대출이자율 인하 속행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여관구)은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로 1%p 인하하기로 하는 대출금이자율 인하 시행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4월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31일 조합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출금리이자율 인하 조정안은 전체 금리를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조합원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인 11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자 납부기간별로 기존 기준금리가 3%에서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5%에서 2.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4.5%에서 3.5%, 6개월 초과 5%에서 4%로, 전체적으로 1%p씩 인하하고 어음할인요율에 대해서도 3%에서 2%로 1%p를 인하했다.

조합관계자는 금번 대폭적인 대출금리 인하 배경을 『조합원을 위한 조합 만들기 운동』중 친절봉사중심에서 편리한 조합업무위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건설시장의 다변화



와 조합원의 취약한 금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합의 노력의 한 단면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건설시장개방으로 인한 조합원의 대외경쟁력 확대를 위해 각종 업무와 제도개선이 활발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이 연평균 1백1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93년도 1%p 인하와 94년도 2%p 인하 등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년 대출금리의 인하를 검토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